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63
----------	-----

2022. 3. 22.  
복지도시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2. 3. 4. 김진홍 의원(대표발의) 등 5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01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2.)  
“ 원안가결 ”

## 2. 제안이유( 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김진홍 의원 )

-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계법령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종전의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  
법령을 현행화하고, “장애인”, “장애인휠체어”, “지원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 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5. 검토의견( 전문위원 : 이문성 )

##### 1 조례안의 취지

- 2021년 12월 기준 강남구 등록 장애인 수는 약 1만5천여명이며, 이 중 의지(義脂) 보조기 및 휠체어 등 재활보조기구를 필요로 하는 지체장애인 비율은 등록장애인의 약 3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장애인 재활보조기구의 체계화된 유통체계를 확립하고, 서비스·품질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생활 뿐만 아니라 좀 더 나은 삶의 질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는 국민복지서비스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16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보조기기법’)이 제정·시행되었음.(2015년 공포, 2016년 시행)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를 둔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이 「장애인보조기기법」에 따라, 2020년 9월 22일자로 폐지되고,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가 공포·발효되었음.
- 개정안은 「장애인보조기기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용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상위법령과 조례와의 체계적합성을 반영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겠음.

## 1. 「장애인보조기기법령」 체계

- 장애인보조기기과 관련한 「장애인보조기기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장애인복지법령」에 의거하여 장애인 등의 보조기기 및 관련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항들에 의하여 ‘국립재활원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인 지원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체적인 전달체계의 효과성과 효율성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 이에 보조기기의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수요자인 장애인이 주무기관 등 책임부서와 시행기관 등을 파악하기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장애인보조기기법」과 시행령 및 규칙을 비롯한 관련 행정규칙<sup>1)</sup>이 마련되었음.
- 현행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12월 개정되기 전의 조항에 근거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에 준거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장애인보조기기법」시행에 따른 법 시행규칙 제2조를 근거로 하고자 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음.

※ 개정안이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sup>2)</sup>을 근거규정으로 함에 따라 그 하위 행정규칙인「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2020년 9월 22일자로 공포·시행)를 포괄하게 된다고 하겠음.

1) 장애인보조기기법령과 관련된 주요 행정규칙으로는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등이 있음.

2) 장애인보조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 13.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표〉 장애인복지법 제65조 연혁

2015년 12월 개정전 장애인복지법 제65조	2015년 12월 개정후 장애인복지법 제65조
<p>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 “장애인 보조기구”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장애인보조기구의 품목·기준 및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p>	<p>제65조(장애인보조기구) ①</p> <p style="text-align: center;">〈좌동과 같음〉</p> <p>② 보건복지부장관은 <u>장애인의 일상생활의 편의증진 등을 위하여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의 지원 및 활용촉진 등에 관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u></p>

- 검토하건데 개정안은 제정된 상위법과 관련 시행령 및 규칙을 비롯하여 관련 행정규칙(고시 및 지침 등)를 준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령’과의 해석상 혼선을 방지하고 체계적합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 다만 현행 조례는 그 근거규정으로서 행정규칙인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그 상위법령인 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두고 있음.
- 이는 행정규칙인 ‘고시’는 행정입법의 대상으로서 행정수요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량껏 변경할 수 있는 사항으로서, ① 조례가 가지는 경직성 및 신뢰성을 고려하여야 하고, ② 조례 제·개정의 엄격한 절차와 과정 등을 감안할 때, 행정규칙 변경에 따라 수시로 조례 개정이 곤란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개정안이 보건복지부 장관령인 법 시행규칙으로 그 근거규정으로 둔 점은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2. 지원대상(안 제4조) 및 수리비용 지원(안 제5조)

현행	개정안
<p>제4조(지원대상) <u>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u></li> <li>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li> </ol> <p>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u>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u></p>	<p>제4조(지원대상) ----- ----- 장애인----- -.</p> <p>&lt;삭 제&gt;</p> <p>&lt;삭 제&gt;</p> <p>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u>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범위-----.</u></p> <p>② <u>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u>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u>의 경우 <u>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u></li> <li>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u>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u></li> </ol>

- 현행 조례는 휠체어수리비용 지원 대상자를 수급자 등 취약계층 장애인과 그 밖의 비장애인으로 구분하고(현행 제4조), 휠체어 수리비용지원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현행 조례가 ① 그 지원대상으로서 휠체어 수리 서비스 대상자와 ② 예산상의 한계에 따라 형평성 있게 차등지급해야 할 사업지원대상을 혼동하고 있는 바, 이는 입법기술상의 실수로 보여짐.
- 이에 개정안은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대상을 관내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수리비용 지원 대상에서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② 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구분하고 있음.
- 개정안과 같이 장애인휠체어 수리서비스 대상은 모든 장애인에게 동일하게 대우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을 반영하며(안 제4조), 다만 장애인의 경제력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게 차등 구분함으로써 재정적 효율성을 감안한 내용(안 제5조)으로 조례를 편제함은 입법 기술상 합리적인 수정사항이라고 사료됨.

### 3 종합 의견

- 금번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체계적합성에 맞게 수정하는 내용으로서 특별한 문제점 없다고 하겠음.

## 참고자료

### 1. 등록 장애인 및 인구 관련 자료(2021년 12월 기준)

(단위 : 명)

연번	구 분	인 구 수	비 고
1	서울시 등록 장애인	391,678	
2	강남구 등록 장애인	15,169	
3	강남구 전체 인구	533,042	
4	강남구 65세이상 인구	78,078	

### 2. 3년간 장애인 휠체어 수리지원실적, 집행내역(대여 제외)

(단위 : 건 / 천원)

연번	종 류	기준금액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수동휠체어	480,000	68	35,160	60	29,960	52	25,480
2	전동휠체어	2,090,000	33	68,940	20	41,800	23	47,972
3	전동스쿠터	1,670,000	49	81,630	39	63,360	19	31,666

### 3. 장애인 휠체어 수리 협약 업체 현황 및 실적

업체현황

연번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1	(주)엠코리아토탈서비스	조미숙	강남구 개포로 140길 32 원효빌딩 1,3층	02-6407-3879
2	(주)강남실버복지센터	심영완	강남구 양재대로 55길 29 대청빌딩 402호	02-3411-6050
3	케어존	성민용	강서구 강서로 45길 174 SM타워 B01호	02-598-3091
4	(주)휠로피아	김윤제	강서구 개화동로 5길 3-26	02-2607-8655
5	(주)엑티피아	김중숙	동작구 등용로 14길 60 2층	02-3280-2181

3년간 장애인 휠체어 수리 실적

(단위: 건 / 천원)

연번	업체명	2019		2020		2021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	(주)엠코리아토탈서비스	260	33,880	260	35,118	313	45,777
2	(주)강남실버복지센터	164	24,535	154	26,698	143	22,217
3	케어존	16	3,110	13	2,680	22	4,350
4	(주)휠로피아	20	2,518	22	3,500	22	3,179
5	(주)엑티피아(2021년 개시)	-	-	-	-	8	765
6	성심메디케어(2021년 종료)	-	-	9	1,565	13	2,580

### 4. 휠체어 수리지원 만족도 조사 결과(수리 서비스대상자)

구분	전체	만족	보통	불만족	비율
서비스의 만족도	468	441	18	9	94.2%
수리업체의 친절도	468	436	23	9	93.2%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진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63
----------	-----

발의연월일 : 2022. 3. 4.

발 의 자 : 김진홍·복진경·최남일·

박다미·이향숙(이상5인)

## 1. 제안이유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에 관계법령인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명시하여 조례의 목적과 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 나. 종전의 「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관계법령을 현행화하고, “장애인”, “장애인휠체어”, “지원대상자”의 정의를 보다 분명하게 함(안 제2조제1호, 제2호, 제4호)
- 다. 지원대상과 지원액의 기준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함(안 제4조, 제5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구청장은 법 제66조”를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장애인 복지법</u>」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u>장애인</u>”이란 「<u>장애인복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u>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u></p> <p>2. “<u>장애인휠체어</u>”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한 「<u>재활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u>」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p>	<p>제1조(목적) ----- 「<u>장애인 복지법</u>」, 「<u>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u>」----- ----- ----- ----- -----.</p> <p>제2조(정의) ----- -----.</p> <p>1. “<u>장애인</u>”이란 「<u>장애인복지법</u>」(이하 “<u>법</u>”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p> <p>2. “<u>장애인휠체어</u>”란 「<u>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u>」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p>

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생략)

4. “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장애인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66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은 전액을 지원하되,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50

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  
-----  
----- 장애인 -----  
-----.

<삭제>

<삭제>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  
- 범위-----.

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

만원 이내에서, 제4조제2호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③·④ (생략)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

③·④ (현행과 같음)